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개정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01월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전**	전** 1972-12-1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송미화 문의전화 : 063-454-7195)

2017년 01월 13일

개정면장

